

의안번호	2206105
의 퇴 인	서미화 의원
회 답 일	2024.12.5.
추계번호	24C5568

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7조의2 (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· 운영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편의시설 전산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2 (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· 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사·건축주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보건복지부는 현재 ‘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’ 자료를 기반으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정보를 ‘복지로’(www.bokjiro.go.kr) 사이트의 ‘복지지도’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음

- 국토교통부는 현재 「건축행정정보화(세움터) 운영」 사업(2024년도 예산 44억 6,300만원)을 통하여 건축·주택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국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운영,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, 시스템 연계 및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
 - 현재 세움터 건축물대장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특정하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른 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은 현행 “복지지도 시스템”을 활용할 수 있으며, 향후 기능을 추가하거나 “세움터”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한편, 현행 “복지지도 시스템”이 아니라 신규로 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에 추가되는 기능 또는 서비스의 내용,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현행 시스템의 확대 규모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